

1. (주)종로는 20x4년 초에 (주)나무에 의하여 흡수합병되고 등기완료되었다. 다음 자료에 의하여 (주)종로의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?

(1) 합병직전 (주)종로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.

자	산	700,000,000	부	채	200,000,000
			자	본	금
				금	200,000,000
			자	본	잉
				여	금
				금	300,000,000
합	계	<u>700,000,000</u>	합	계	<u>700,000,000</u>

(2) (주)종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을)상의 세무상 유보 잔액은 ₩20,000,000이다.

(3) (주)나무는 합병일 현재 (주)종로의 주식 1,5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x3년 초에 1,000주를 주당 ₩6,500에, 그리고 20x1년 초에 500주를 주당 ₩6,000에 취득한 것이다.

(4) 합병대가로 (주)종로의 주식 1주에 대해 (주)나무의 주식 1주(액면가액 ₩5,000, 시가 ₩6,000)의 비율을 적용하여 98,500주를 발행·교부하였다((주)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(주)종로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음).

(5) 상기 합병은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.

(1) 양도가액 :  $(98,500\text{주} + 1,500\text{주}) \times ₩6,000 = ₩600,000,000$

\*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(포합주식)이 있는 경우 그 포함주식에 대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계산한다.

(2) 순자산 장부가액 :  $(₩700,000,000 + ₩20,000,000) - ₩200,000,000 = ₩520,000,000$

(3) 양도손익 :  $₩600,000,000 - ₩520,000,000 = ₩80,000,000$

2. 갑법인은 을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.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매수차익을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?

(1) 합병직전 을법인의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.

자	산	8,000	부	채	3,000
			자	본	금
				금	3,000
			자	본	잉
				여	금
				금	1,000
			이	익	잉
				여	금
				금	1,000
		<u>8,000</u>			<u>8,000</u>

(2) 합병직전 을법인 자산의 공정가액은 ₩12,000이며, 부채의 공정가액은 장부가액과 일치하였다. 갑법인은 을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수하였다.

(3)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액면가액 ₩2,000(시가 ₩7,000)의 갑법인 주식을 교부하였다.

(1)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조정계정 :  $₩12,000 - ₩8,000 = ₩4,000$

(2)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매수차익 :  $(₩12,000 - ₩3,000) - ₩7,000 = ₩2,000$

3.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충족하지 못한 경우 (주)A의 합병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시오.

- (1) (주)B는 (주)C를 흡수 합병하였으며, 합병전 (주)A는 1주당 취득가액이 ₩10,000인 (주)C의 주식 10,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.
- (2) (주)A는 합병대가로 (주)B의 주식 12,000주와 (주)C의 주식 1주당 ₩5,000의 합병교부금을 수령하였다.
- (3) 합병등기일에 교부된 (주)B 주식의 시가는 ₩15,000이며 액면가액은 ₩5,000이다.

- (1)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: ①-②=₩130,000,000
  - ① 합병대가 : 12,000주×₩15,000+10,000주×₩5,000=₩230,000,000
  - ② 소멸주식의 가액 : 10,000주×₩10,000=₩100,000,000
- (2)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경우 : ①-②=₩50,000,000
  - ① 합병대가 : Min[12,000주×₩15,000, 10,000주×₩10,000]+10,000주×₩5,000=₩150,000,000
  - ② 소멸주식의 가액 : 10,000주×₩10,000=₩100,000,000

4. 다음은 (주)나무가 (주)신촌을 흡수합병한 내역이다. (주)나무가 합병시점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중 ₩450,000,000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금액은 얼마인가? 단,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상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이다.

(1) (주)신촌의 합병직전 재무상태표(세법상 금액과 동일함)

재무상태표				
토	지	500,000,000	자 본 금	500,000,000
기	계	장	자	본
		치	이	잉
			이	잉
			여	금
			금	
			100,000,000	
			800,000,000	
			800,000,000	

\* 자본잉여금 중 ₩110,000,000은 주식발행초과금이고 ₩90,000,000은 재평가세 1% 과세분인 토지 재평가적립금이다.

(2) (주)나무는 (주)신촌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였으며 (주)신촌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써 액면가 ₩450,000,000, 시가 ₩950,000,000 상당의 주식을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.

(차) 토	지	600,000,000	(대) 자	본
기	계	장	자	본
		치	금	금
			450,000,000	
			500,000,000	

합병차익의 구성		전입액
의제배당 대상 잉여금	① ₩340,000,000 <sup>1</sup>	② ₩290,000,000 <sup>3</sup>
대상 아닌 잉여금	② ₩160,000,000 <sup>2</sup>	① ₩160,000,000
합 계	₩500,000,000	₩450,000,000

- \*1. 합병차익 중 의제배당 대상인 잉여금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자산평가증액(자산조정계정 해당금액)           | ₩150,000,000 |
| ② 토지 재평가적립금 상당액(의제배당 대상인 자본잉여금) | 90,000,000   |
| ③ 이익잉여금 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| 100,000,000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₩340,000,000 |
- \*2. 합병차익 중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잉여금 : ₩500,000,000 - ₩340,000,000 = ₩160,000,000
- \*3. 의제배당 : ₩450,000,000 - ₩160,000,000 = ₩290,000,000  
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잉여금을 먼저 전입한 것으로 본다.